#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6621 제출연월일 : 2024. 12. 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 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심의·조정)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조정한다.

- 1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했

제7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 회)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 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 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

- 1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

  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

  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

   사항
- 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

   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

   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 항
-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

개 정 안

제7조(학교 박 청소년 지원 정책 심의·조정) 학교 밖 청소년 지 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0조에 따 른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·조정한다.

- 1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

  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

   항
- 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

  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

   사항
- 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지원위원회의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